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MON87419×NK603 및 카놀라 MS11×RF3×MON8830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MON87419×NK60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20-2호	2020. 2. 11.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카놀라 MS11×RF3×MON88302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0-3호	2020. 2. 11.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8)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반영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9호, 2018.4.18.)의 법적 근거 마련(안 영 제3조의2 신설)

1) 기존 고시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뿌리기업"을 정부에서 확인해 주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

2) 해당 고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의 대상 확인 및 가점 부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